

2001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都市管理局

日 時 2001年11月29日(木) 10時0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安載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이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은 종로구의 핵심적인 부서 중의 한 부서입니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지어서 볼 때 각종 규제나 인·허가와 관련지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감사에 있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해서 심도있는 심사에 일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정활동이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한 도시관리국 직원들께서는 그동안 1년간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河徹昇 都市管理局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都市管理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綠地課長 俞樂潛

○委員長 安載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安載弘 委員長님! 그리고 吳弼根 幹事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宣圭景 住宅課長입니다.

李廷花 都市計劃課長입니다.

李漢求 建築課長입니다.

俞樂濬 公園綠地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현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照)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도시관리국)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河局長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과 업무나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말 국장 말씀처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河徹昇 局長님, 課長님, 係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운시민아파트 11개동 577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보상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분양권까지 주게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건물보상과 더불어 아파트 입주권을 드리게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렇습니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전환한다고 우리 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001년 4월 20일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언제쯤 결말이 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역사문화미관지구였을 때는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직로와 자하문, 의주로변은 무작정 층수 제한을 풀기에는 무리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정비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관내의 화장실을 재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인왕산이 우리나라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밀집되고 있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해달라고 제가 2001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2002년도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인왕산의 화장실을 개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인왕산은 현재 시 관리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지구단위로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 계획상에 화장실을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을 수는 없고 차후에 청운아파트 지구라든가 조성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화장실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 받아서 반영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부탁드리고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가구는 어떤 것이고 다세대는 어떤 것이라고 세분화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됩니다. 한 건물로 구분 소유가 안되고 다세대는 구분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6세대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봤을 때는 한 사람 소유로 등기를 해야 하고 다세대인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다세대로 허가를 받지 왜 다가구로 허가를 받죠? 건축할 때.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주의 편의에 따라서 다가구로 받을 수도 있고 다세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이유는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다가구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재개발 지구나 재건축지구는 다가구도 단독개념으로 보고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느 지역에 있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丁炳煥委員 재개발, 재건축지구의 1가구 2주택을 소유했을 때도 분양은 한 세대밖에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2세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가구 2주택이라도 한 세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법이 개정 안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재건축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다가구를 일반한데 전부 분양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 동에 다가구가 5세대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나머지 네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된 일인지 단독을 다세대로 세분화해서 등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하나의 건물로 보지만 소유는 공동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다섯사람이 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단독주택도 열사람이 되든 백사람이 되든 공동소유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단독을 다세대로 세분화해서 등기를 내고 있거든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丁炳煥委員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단독으로 되어 있던 단 말입니다. 몇년 전부터 단독으로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등기를 세분화해서 다세대로 만들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건축기준에서 차이점은 북쪽에 일조권이 있을 때 다세대였을 때는 도로 중심선에서 일조권을 적용하고 다가구는 도로 반대편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다가구로 되어 있던 것을 그 기준에 맞으면 용도 변경해서 다세대로 변경처리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단독을 말하자면 주차장요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비를 해야만 건축법에 맞지 않습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다세대나 다가구는 주차장은 같습니다. 0.7대

○**丁炳煥委員** 단독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할 만한 장소도 없는데 그것이 다세대로 분류가 되느냐 이겁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대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세대로 나갔다가 다세대로 되는 겁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년 전부터 단독으로 허가를 받아서 단독으로 건축을 했던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 재건축을 한다니까 그것을 다세대로 분류를 시켜요. 그게 가능한지요?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모든 요건이 맞아야 다세대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건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다세대로 세분화시키느냐 이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단순한 동기만 변경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건축의 용도 자체를 단독에서 다세대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인지

○**丁炳煥委員** 아니, 그것이 용도나 모든 것이 변경되었으니까 동기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동기가 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단독이라 하더라도 동기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두사람, 세사람, 네사람 공동소유로 세분화해서 동기가 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세분화해서 다세대로 만들었던 말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독이라 하더라도 다세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현 건축법으로 볼 때 다세대면 주차장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별

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기존의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변경이 됐다면 아마 기준에 맞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무악동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을 제가 맡다 보니까 요즘 단독으로 즉 말하자면 동의를 했는데 다세대로 세분화해서 전부 분양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어요. 동의서를. 그리고 또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만약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경우에는 단지 내에 다가구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가구가 한 건물에 5세대가 단독주택이지만 일반분양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그 사람들 분양권을 한사람한테만 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丁炳煥委員**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풀면 구청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가령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물에 다섯사람이 개별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망정 어쨌든 다섯사람의 분양권을 쥐야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지 한사람만 준다고 하면 영원히 개발이 못합니다. 그것이 구체방법이 있는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것은 조합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다섯사람이 공동소유로 하고 있을 때 5명에게 분양권을 다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조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5개를 다 주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丁炳煥委員** 쥐야 됩니다. 안주면 사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합에서 그것을 다섯사람한테 분양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만 가지고 따질 것인지

우리 지역뿐만 아닐 것입니다. 비단, 참, 근래에 와서 우리 지역은 이상하게 한번 자력개발한 지역이라 다가구도 많지요. 단독도 있죠. 공동주택 집합건물도 많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단독을 전부 세분화해서 다세대로 등기가 다 났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조합에서는 다섯사람을 분양권을 다 쥐야만 개발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궁극적으로 좀 점검을, 검토를 하셔서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구가 5세대 소유로 분할해서 소유했을 때는 그 다섯사람한테 분양권을 다 주는 것이 우선은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어느 세대가, 다 구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 개발하는데 만 개가 나오면 어떻게 만 개를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丁炳煥委員 그렇게는 안되고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단독인데 공부상에 엄연히 다세대로 분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을 단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다세대로 분류해야죠.

○丁炳煥委員 다세대로 그것이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존의 단독주택, 1층짜리,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금 다세대로 세대별로 등기를 했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세대로 용도 변경이 돼서 세대별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고 공동소유로 등기를 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丁炳煥委員 아닙니다. 세분화됐습니다. 집합 건물처럼 몇분의 몇은 A라는 사람, 몇분의 몇은 B라는 사람 다세대로 분명히 세분화됐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다세대가 아니고 그것은 단독도 얼마든지 면적을 구분해서

○丁炳煥委員 다세대로 공부상에 나왔다니깐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래요?

○建築課長 李漢九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독으로 해서 세대별로 구분이 된 게 아니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몇층짜리 건물입니까?

○丁炳煥委員 2층짜리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층 한세대, 2층 한세대요?

○丁炳煥委員 지라도 세분화되어 있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세대별로요?

○丁炳煥委員 예.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것은 기존의 단독이거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가능한 기준에 합치되기 때문에 아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丁炳煥委員 이것은 아무튼 말입니다.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울시라도 알아봐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다가구는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다가구로 분명히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다가구를 한 건물에 여섯세대 사는데 한사람만 분양권을 쥐 가지고 개발이 되겠느냐, 조합에서는 여섯사람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 안하면 개발을 못합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關係官席에서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재 다가구를 재건축지역 내에서는 다세대로 너무 쉽게 용도 변경을 해서는 조합에서 곤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丁炳煥委員 예.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것은 이러한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재건축은 통상적으로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재건축 구역을 확정하다 보면 인근에 불가피하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 재개발 대상인데 재건축을 하다 보면 아파트 인근에 불가피하게 포함시켜야 하는 단독주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몇 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독주택은 100% 동의를 받아야만 재건축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뭔가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기존의 한 세대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여러 명이 다섯명, 여섯명으로 개인등기를 하거나 공동소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6명 다 아파트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수용 안하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명이 다가구로 다 등기가 되더라도 6명 다 한명만 줄 것이 아니라 여섯명을 입주권을 다 주자. 그래야 재건축이 추진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아는데

○**丁炳煥委員** 단독을 다세대로 구분해서 한사람이 소유가 아니라 일반분양 해서 매도를 다 했어요.

○**建築課長 李漢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委員長 安載弘** 잠깐, 李漢九課長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세요. 답변하세요.

○**建築課長 李漢九** 지금 위원님 말씀은 등기상에 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지분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몇분의 몇이것은 하나의 건축물대장에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세대로 구분이 되면 단독등기가 됩니다. 건축물대장도 달라지고 등기도 하나로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지분으로 해서 등기가 된 게 아니라

○**丁炳煥委員** 다세대 개념으로 분류를 했어요.

○**建築課長 李漢九** 그러니까 건축물대장도 갈라졌다면 지분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丁炳煥委員** 그러면 구청 즉 말하자면 법원 것은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우리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분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부상에 구분이 됐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그러니까 방금 건축과장이 답변드렸습니까마는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구분해서

지분등기가 가능합니다. 1층 따로, 2층 따로 법원에서 등기상에 구분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가 되려면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 변경이 되어야 다세대가 되는 거지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화장실 따로 할 수 있어요. 화장실 따로, 창고 따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어떠한 간에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부상 등기상은 다세대로 구분해서 세분화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에서 구분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분 안시킬 수도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럼요. 법원의 등기사항과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은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로 관리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법에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규제하는 거고 법원의 등기사항은 그 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사항 대로 백사람이 등기할 수 있으면 화장실 따로, 문 하나도 등기해줍니다. 창고 하나 등기해달라고 하면 등기해줍니다. 법원은 소유주가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사항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는 전혀 별개고 다만 현재 건물을 전부 지분등기 했는데 지분 등기한 건축주들을 어떻게 재건축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합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분양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는 여기에서 관청에서 법적인 문제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구분등기에 대해서 각각 분양권을 주게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해 집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다 백명만 하겠습니까? 천명도 하겠죠. 그러면 재건축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는 조합원들이 다

른 방법으로 기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구분되기된 그 분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방면에서 혜택을 쥐야지 그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丁炳煥委員**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혹시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다가 좀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장은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계장, 과장,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의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준비 다 안 하셨죠? 局長님! 저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대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있는데 2000년도에는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133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행정대집행 실적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200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된 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작년도에는 행정대집행이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4건이나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4건은 우선 권농동 건은 길에다가 도로상에 무단건축을 해가지고 점포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건축이 된 거라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해서 철거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사항은 인근에 민원이 강력히 제기돼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게 됐구요 3번과 4번은 낙산공원화사업 지

구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金福同委員** 물론 불법으로 되어 있고 불편을 초래하는 곳은 철거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분들에게 커다란 손해나 그런 것이 없이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기 창신동 쪽대기 불법으로 몇 십년 동안 상가가 형성되어 있던 곳,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局長님과 전혀 관계가 없군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소관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135쪽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집행 처리내역이 있어요. 2000년과 2001년도의 구분이 약간 다른 게 있고 우리 종로구는 600년 이상 된 도시이기 때문에 낙후된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창신동지역은 건물도 노후되고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으로 해버리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3년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3평 미만 되는 것은 구청장께서 단속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부쩍 항공촬영에 적출됐다는 사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金福同委員님께서 항상 주민과 서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허가 부분만 나오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과 괴로움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종로의 현실과 여건을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데 일단 무허가를 단속하게 되는 배경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주민과 불화가 생겨 가지고 인근 주민이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항공촬영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평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주변에 강력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올 때마다 가급적이면 평소에 이웃하고 사이 좋게 지내시지요 하고 농담도 합니다만 평소에 주민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 다했던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평이라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적출을 했을 경우에는 가급적 3평 미만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3평 미만일 경우 점포로 활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3평 이하라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정말로 주민이 살기가 불편해서 증축한 게 3평 미만인 경우에는 가급적 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도 인근의 주민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법대로 조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될 때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올 때마다

○金福同委員 그렇지만 局長님! 반 평도 안 되는 걸 갖고 시비 불고 이웃에서 물론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무허가 발생을 한 분도 나쁘지만 30~40년 전에 발생했던 무허가건물도 이제 적출됐다고 자꾸 계고장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84년 이후에 발생한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관계공무원에게 당신의 능력껏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를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주

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능하면 서민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다음 종로5·6가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창고형 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 지역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최근 물류센터가 상당히 큰 건물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게 준공되고 나면 인근의 가설창고들이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합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창고형으로 허가가 나 가지고 몇 십년씩 창고로 이용하던 건물을 어느 날 갑자기 용도변경을 해줘서 그 곳에 창고를 소매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가를 만들어서 다시 분양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局長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종로5·6가동에는 가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건축물은 3년 허가로 되어 있고 3년 후에는 건축물의 안전진단 후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은 창고로 지어졌기 때문에 8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로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2~3층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네. 답변하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동대문상가의 용도변경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구요 용도변경은 신청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해줘야지 그걸 주변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의 용

도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품야적장이 서울시조례 제15조에 보면 500m' 이하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주거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거지역 이런 데에 민원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300m' 이하로 줄여주고 높이도 4m 이하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제 건의를 해왔습니까? 지난 6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좋은 동네 주거환경이나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인데 요즘 갑자기 종로구가 변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쓰기 위해서 주거지를 옮기고 그것을 헐어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가건축법을 보면 거기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요?

○**建築課長 李漢求** 신설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럼 있던 거는 상관없습니까? 그곳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되거나 주거지역인 그 창고를 보면 10~20mm짜리 스티로폼을 가운데 넣고 철판을 압축해 가지고 만든 건축물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건의를 했더니 지금 화재에 대해서는 안전하도록 내화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건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거지역에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 말씀 같아서

○**金福同委員**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몇십년씩 살던 주민들이 외부로 떠나고 있어요. 금년 통계조사를 보면 약 500명이 외부로 떠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거환경이 안 된다. 창고나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골목 소방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창고에서 실어내고 오고 가고 하는 것 때문예요. 이렇게 불편한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누차 우리 구청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계속 요즘도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 나오는 세금이 더 많아 집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세금관계는 제가 모르겠구요

○**金福同委員** 세금 나오는 건 局長님이 대답해 보세요. 새로 지어 가지고 주택으로 있던 걸 헐고 가건축물 지어 가지고 2~3층 쓰고 있으면 우리 구청 구세가 많이 떨어지는지 局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세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서 좋은 주택을 지어서 우리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고 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있는데 왜 종로에 살고 있는 사람 자꾸 외부로 떠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외부사람들이 살기 좋고 쾌적하니까 종로에서 살기 위해서 데려와야지 창고나 들어서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꾸 종로인구가 떠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것이 동네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종로5·6가동이 작년도에 3동이고 올해 14동입니다.

○**金福同委員** 금년엔 엄청나게 많이 신장했네?

○**建築課長 李漢求** 그리고 거기 지금 종로6가 26-3 외 8필지에 지하2층, 지상9층에 면적은 4,736㎡이고 지금 5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다면 주변에 있는 건 많이 흡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알고 있습니다. 課長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가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별로 돈이 들지 않아요.

가건축물을 설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보면 2층, 3층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종로구 전체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가지요.

○**建築課長 李漢求** 조례가 강화되도록 저희가 힘 쓰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해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해화동에도 명륜어린이집 또 해명경로당 위 어린이 놀이터를 깨끗이 정비해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시설공원이 16개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28개입니다.

○**吳弼根委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현재는 담당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찰은 공익요원을, 공원감시엔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은 못 하고 순차적으로 지역이 넓으니까 한 3~4일에 한번 정도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렇습니까? 혹시 종로구어린이공원관리규칙에대한조례(안)을 알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요 근래에 된 건 없구요 옛날 새마을어린이놀이터가 생기면서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관리규칙개정이 '99년 7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이 관리규칙에 보면 이걸 알고 계세요. "구청장은 공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공원에 대한 순찰과 정비대상 파악 및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서는 3일에 한번씩 순찰을 한다고 하셨어요. 순찰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구청장은 공원 내 다음 각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라고 여기 나와있어요. 그런데 순찰을 잘 하신다고 하니가 순찰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은 정말 멋지게 잘해왔습니다. 수억씩 예산을 들여서 다른 어린이공원도 앞으로 현대화 작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잘만 현대화사업 해놓고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놀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어린이공원도 가봤습니다. 청소상태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정말 휴지나 쓰레기더미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와서 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순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지금 현재는 놀이터 담당이 공무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는 기능직이 1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한테 어린이공원에는 기능직도 1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청소요원도 그전에는 동에서 청소를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전환된 후 지금은 그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어린이공원관리규칙을 읽어보셨더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원별, 지역별로 어린이공원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위원은 공원의 권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발전과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들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탓만 할 것이 아닙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공원을 동장이 관리할 때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吳弼根委員 아니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도 보면 위원회를 뒤 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넘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런 위원회는 학부모들로 구성된다면 얼마든지 알아서 자기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인력 탓만 하고 청소는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전혀 안한 거는 아닙니다.

○吳弼根委員 한번 가서 보세요. 입구부터 쓰레기더미가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오늘 이 위원회관리조례를 읽어보시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동장과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해보겠습니까? 약속하시고 정말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깨끗한 데서 뛰어 놀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보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관리를 공무원이 못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구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다른 곳보다 많이 있네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청은 78개씩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게 있는데 대학로 가로수 밑에 관목류를 식재한 적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저희도 그것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정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비를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중간에도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상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중구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쉼스를 조그맣게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되겠어요? 대학로입니다. 서울의 관문입니다. 최고로 좋은 데입니다. 거기에 그런 쉼스를 쳐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화단이라고 조성해놨습니까? 철거를 하세요. 철거를 해버리고 그걸 높이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높이면 수목이 상당히 가리게 되는데 그건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쳐놓은지 얼마 안됐는데 철거하면 좀 그렇습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세요.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공원은 유네스코에 올라있는 거 아시죠? 그 공원에 가서보면 심어진 나무의 뿌리가 엉성하게 나와있는 거 아십니까? 나무를 심을 때 나무가 오래 살고 바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감고 있던 걸 제거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 감고있던 고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뭉쳐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흙을 부어준다든가, 잘라준다든가 해야 나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공원을 가서보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낙엽이 그대로 썩게 만들었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쓸어냅니다. 낙엽이 얼마나 영양소가 많은데 그걸 쓸어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종로광장 같은 데는 잔디가 있는 곳은 쓸어줘야 됩니다.

○金福同委員 공원뿐 아니라 가로수도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예식장 부근을 보십시오. 나무가 도로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반듯이 세우든지 전지를 하든지 하면 좋을텐데 휘어진 상태로 두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유발되고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다 부딪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신다면 종로에서 보기싫은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기운 나무가 작은 나무 같으면 바로 세우기가 쉽지만 지금 대학로나 율곡로에 있는 나무는 상당히 큼니다. 바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천상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金福同委員** 제가 여러번 질의를 했어요. 옷자른 가지들 잘라주고 그러면 중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이겁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위원님께서 전지작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도 전지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중전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전지도 지금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종로를 시작해서 자르기는 했는데 보기가 좋긴 좋은데 이번 추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종로지역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자르는데 최대한도로 약하게 자르겠습니다. 많이는 못 합니다.

○**金福同委員** 전지를 잘못함으로써 교통표지판이 가려지고 그 주위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지를 과감하게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보기도 좋고 한가지 예를 들면 서대문로터리에서 무악재쪽을 보면 서대문쪽은 전지를 했고 종로쪽은 전지를 안 했고 보기가 아주 묘해요. 서대문쪽은 제대로 전지를 하는데 종로는 왜 안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최대한도로 전지는 하고 신호등을 가리는 것은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신호등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 싫은 것은 자른다고 해서 몽땅 자르지 말고 원만하게 보기 좋게 자르는 것이 좋아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저희도 약전지로 하면서 전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전지하는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올리더라도 다음 해에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炯述委員 委員長!** 진작 얘기가 나왔어야지 어떻게 본 위원이 말도 하기 전에 짧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 지나간 위원들이 중복된 질의를 해도 계속 됐다가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짧게 하라고 하면 그 의도를 위원장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할 때는 해주시고 바람직하고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조금 전 **金福同委員** 질의한 중에 공원녹지과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지부분 지난 여름에 6월달에 감사원 올라가는 곳에 소나무 심었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예.

○**李炯述委員** 중앙고등학교 부분에 소나무 심은 그 위에 독성이 아주 강한 나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위에 전지를 안하면 소나무 그대로 죽습니다 하고 얘기들을 수차례 했는데도 나무를 심어 놓고 전지를 안함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었어요. 며칠 전에 중앙고등학교 갔더니 선생님들 입에서 저거를 전지를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종로구청은 하지 않아서 나무가 죽었다. 주민들이 와서 얘기가 그랬는데 우리 녹지과장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중앙고등학교 후문에 소나무 하나 죽은 거, 그 위에 가려있는 독성이 있는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 밑에 어떤 나무도 살지 못한다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소나무 심어놓은 그 위에 독성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파리만 떨어져도 다른 나무가 다 죽는데 들어본 일이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못 들어봤습니다.

○李炯述委員 심을 때도 심어놓고 저 나무 전지 안하면 나무 죽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얼마만큼 소홀합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거 심어놓으면 죽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감독관청이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왜 과장은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죽은 소나무를 다시 갖다 심는다고 했는데 두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조치 안한 이유가 뭐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심었습니다.

○李炯述委員 심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거의 15일 정도 되었습니

다.

○李炯述委員 그 나무 위에 전지 안할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확인을 해서 전지를 하겠습니

다.

○李炯述委員 놔두면 죽는대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확인을 해서 바로 전지하도록 하겠습니

다.

○李炯述委員 서울시에서 각 공원에 쉼스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 예산이 내려오죠? 시비로. 쉼스뿐만 아니라 산책로에 많은 시비가 내려오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정비 예산으로 내려옵니

다.

○李炯述委員 내려오기 전에 구청에서 어느 공원의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정한 예산이 오면 녹지과에서 알아서 처리합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유지관리비는 일괄적으로 내려오고 시설비는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을 시에서 검토해서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李炯述委員 모든 구조물이 가급적이면 오래 건널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택해 가지고 일단 구조물 설치를 하고 또 몇년 후에 다시 교체시키고 그러지 안하고 모든 건축물은 오래될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종로구청 돈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고 해서 몇년 쓰다가 교체시키고 또 교체시키고 이걸 바람직하지 않거든. 또 산책로에 보면 주민

산책하는 시민들 편에 안 서고 집행부 몇사람이 앉아 가지고 머리 속에서 나온대로 가지고 공사를 해요. 공원에 올라가보면 새벽에 우리 시민들이 산책합니다. 대도시의 시멘트 도로, 아스팔트 걷는 것보다 공원에 올라가면 흙을 밟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공원에다 왜 시멘트를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저도 공원에 포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녹지과장이 지나고 나면 다른 과장이 옵니다. 누가 간섭을 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사하면 다 하고 난 뒤에 발견을 해요. 그러면 과장회의를 할 때 전문가들 아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민들 산책한 사람들 이렇게입니다. 멀쩡한 쉼스를 교체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술 한 잔 얻어 먹고 교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앞으로 어느 소재를 하더라도 길게 10년이상 20년이상 갈 수 있는 이런 소재를 해서 금년 했다가 몇년 후에 교체시키고 또 교체시키고 시멘트 한 거 흙을 또 얹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원에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바닥에는 포장을 안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임야쪽의 공원에는 될 수 있으면 포장을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청공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비탈만 되어 있고

○李炯述委員 지금 그런데도 바로 공사를 해올라가다가 주민들이 하도 여론이 심해서 중단을 시켰어요. 밑에 길이 아니고 윗길에도 시멘트로 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후임자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러한 시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하는데 1종, 2종, 3종을 하는데 기준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표준규정이 없이 용역에서 알아 가지고 세분화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치에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 만일 때에 따라 가지고 1, 2, 3종에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각 종별 경계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이 부분을 일단 용역하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아, 이거는 맞겠다.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될 때까지 국장님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어제도 같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건축과에 머지 않아 가지고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좋은 상도 받는다니까 우리 도시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아주 뿌듯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원서지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죠? 여기에 애초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것은 아무리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이것을 입주를 해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수시로 현장에 가보면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 열흘 그대로 아무 사람도 없이 방치해둡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아주 열심히 하다가 늦어지는 건 좋은데 10일씩 일을 안합니

다. 사람 하나 없어요. 어디 시멘트 굵고 저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길래 지나가다가 한 얘기가 사람이 수시로 바뀐다. 소장도 바뀌고 바뀐대요. 거기에 일하는 분 얘기가 하도급을 세차례 받았다고 그래요. 미장이면 미장이고 쓰미면 쓰미고 이러한 부분을 하도급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는 하도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호도 줘야 되고 미장도 줘야 될 거고 조적도 줘야 될 것이고 이것은 혼자 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건설면허만 갖고 공사발주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 넘겨주고 또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또 넘겨주고 하도급 치고 이러한 공사가 잘 될 수가 없다가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주실래요? 주택과장이 해주실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과장이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과장님! 답변하세요.

○**住宅課長 宜圭景**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서마을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준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가 되고 현재 미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급피치를 올려서 시급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과장님! 주택과장님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종로구청 건축공사를 하면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현장소장이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어야 세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당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조그만 개인집 40평도 안되는 건물 짓는데 소장이 막 바뀌고 직원 바꾸고 이런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좋은 작품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 책임자가 나가면 그 사람이 그 현장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일단 원서지구의 마을회관을 거기다가 한 예를 들어드린 거지 다른 현장도 역시 이러한 것이 나오면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委員長 安載弘 답변 해주세요.

○住宅課長 宣圭景 지금 李炯述委員님께서 현장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리고 계약서에는 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발주계약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를

○委員長 安載弘 원서공원에 대한 것은 공사대장을 가져 와서

○李炯述委員 원서공원이 아니라 공사대장을 가져왔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

○委員長 安載弘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할 수 있다고 보면

○住宅課長 宣圭景 하도급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하도급은 전혀 될 수 없는, 원 발주서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원 계약서 있을 거라구.

○住宅課長 宣圭景 계약서 사본을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이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이 되어 가지고. 식수사업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이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준공일로부터 2년

○玄壽漢委員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데는 잘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타기관에 이식해 준 거 우리 구에서 구비로 투자해서 한 것은 나무가 죽었는데도 이식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점은 우리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일이 많다 보니까 잘 나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복악산 길이나 인왕산길 펜스 고치고 산책로 만드는 것이 지금은 주민들한테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당해위원들한테 통고를 해줘야 하는데 물론 펜스, 산책로 만드는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내년 월드컵 때문에 급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2, 3년 전에 펜스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헐어버린 다니까 우리 세금 가지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공사를 시비를 받아서 하든 뭘 하든 당해의원들한테는 이러한 것을 급히 하게 됐다고 해서 알고 있어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감사기 때문에 팔각정까지 한바퀴 돌고 사진까지 찍어서 왔어요. 그점 유의하시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타기관에는 나무 심은 데 죽었는데도 공사업자가 심지를 얹더구만. 2년이 지나도.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공사로 인해 발주한 것은 하자가 있고 저희 자체로 구매해서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래서 하자보수기간도 2년이라니까 타기관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 데 해줬는데 구에서 했으니까 구에서 어렵히 하겠지 하고 나무가 죽어도 말은 안해. 업체가 심지를 얹아요. 그러한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달라는 애깁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자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재무 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1년도 자료가 숫자만 나와있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능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원해서 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업무를 구로 이관하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지니까 일일이 21개 동을 관할하기에는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말하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처리내역이 각 동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장들은 업무권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뒷짐지고 있습니다. 가서 말해봤자 오히려 욕먹을 일이니깐 그래서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행자부에서 이러한 것은 물론 예측도 못하고 이게 좋겠다라고 했겠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은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들은 솔직히 1년 내내 돌아서 현황을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20년인가 넘은 노후건물들 외부 다른 구청에서 건축사나 뭐가 해서 돌아다니면서 건물 살피고 좋다, 나쁘다 얘기도 없이 그냥 가는 걸 내가 봤는데 자료 숫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조치내역을 어느 동 것 어디 것을 다 가져오라고 하면 복잡하니 가져오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향후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동업무가 전부다 구청으로 넘어온 이후에 무허가 중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수없이 발생해.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단속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도 하면 되는 줄 알고 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공휴일을 끼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동감사 때나 흔히 각 동에 알아 봅니다마는 전부다 동직원들은 손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실 것인지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붙는다고 그래도 지금 그것도 제대로 안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허가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무허가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직원으로 전 지역을 단속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매일 순찰은 합니다. 순찰은 하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각 동에서 매일 순찰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 시스템으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다만 항공촬영이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을 통해서 거의 다 적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 적출을 해서 짓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적출하는 것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유리하지만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적출해서 못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재산적인 피해도 적고 바람직합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인력 가지고 모든 지역을 완벽하게 순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방법이 없고 다만 항공촬영을 통해서 차후에 다 적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후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반을 차량을 통해서 전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하세요.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玄壽漢委員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동을 한바퀴 순회합니다. 어디가 무단 중축하고 뭐고 눈에 다 들어오는데 이것이 안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사람도 보니까 나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철거반이 나간다든가 강제이행금 부과시킨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저희 초창기 1대 때 의원들이 단속이 안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부시자 해서 이러한 것이 생긴 것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로는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나가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사전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제가 추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료 나온 것 일일이 가져와서 한 일이 있냐, 없냐 여기 나온 숫자 그 외에 엄청나게 많습시다. 그래서 주무과나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이게 아마 쉽사리 고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해서 멀쩡하니까 하겠다. 또 한 예로는 1층 했는데 1년 지나도 아무 소리 없으니까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동 직원들은 보고도 내 업무가 아니니까 그 전 같으면 구청으로 보고 띄워서 무슨 조치가 금방 나갔다고.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허가 증축, 개축 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 점 더 확대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권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리고 이왕 잡은 거 딱 한가지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요,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나 이제 끝나요.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조금만 참아주시고 다음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질의하실 거면 질의 요청을 하세요.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에 앞서서 경희궁에 대한 본관이나 미술관, 공원부지로 있는 거, 운동장으로 있는 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빼서 갖다 주시고 어느 지역은 현재 공원으로 있고 어느 지역은 무슨 건물이 있는가를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궁 본관 뒷쪽을 보면 소형 운동

장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로 동청사가 있을 때 세종로 주민들께서 아침에 조기축구도 하고 조깅도 하고 해서 소운동장이 있는데 일부는 지금 건물로 갖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 보면 다른 데다 식재하다가 나무가 거의 죽어가는 그런 나무를 거기에다 일부 심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뒷쪽에 보면 정말 깊은 산속같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어떤 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을 요청해서라도 공원조성을 시키고 그 운동장을 소규모지만 아침에 조깅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조기축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운동장이라고 한 그 자리에 보면 토양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봐도. 거기에다 나무를 다른 데서 살기 어려운 그런 걸 다시 이식해서 식재를 해줘야 그 나무가 살기 힘든 그런 토양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운동장 위에 나무를 이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 관내에 이식할 나무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거의 다른 데다 이식하기 어려운 거 나무가 좀 불량하다든지, 전지를 많이 해야한다든지, 거기서 일단은 활착을 시켜볼까 해서 거기에다 옮겨놨구요 거기서 활착이 잘 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옮기면서 장소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해왔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토양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토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거기에 마사가 섞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임야든 대지든 대부분 토양이 암반이나 마사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어떤 면에서는 마사가 활착하기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희궁 그 지역도 토양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관리사무실 뒷쪽은 옛날 임야나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데 사실상 경

회궁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시에서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 바람에 저희가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유지라든지 그런 걸 따지면 시설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산책로 정도는 만들어도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 많이 하고 승정원도 복원하고 그래서 저희는 손을 많이 못 댔습니다.

○吳錦南委員 거기가 앞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본관건물 뒷쪽에 가면 전혀 공원이 손이 안 닿아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일부는 녹지로 되어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도 그렇게 쓸모있는 나무는 못 됩니다. 그 뒷쪽으로는 지하병커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카시아나무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만 병커가 있고, 그 주변의 시설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吳錦南委員 경희궁 뒷편을 새로이 어떤 구상을 하셔서 소규모 운동장도 만들고 아까 말씀처럼 토양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식재도 하시고 그 윗쪽에 있는 공원도 살려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산책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윗쪽에도 토양은 좋지 않습니다. 암반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다니다시피 다니는데 그 공원이 있는 쪽은 시설을 하면 충분히 좋은 여건이 됩니다. 다음에는 사직공원에 이식한 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물을 흡수해서 살면 쉬운데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나무가 살지 못하다 보니까 잎이 피다지다 해서 어느 한 가지는 살고 나머지 가지는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가지는 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가지는 한 두개밖에 없어요. 원 기둥에서 올라와서 다섯개의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가 죽다 보니까 쳐버리고 나중에 두개만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바로 2년 정도의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교체를 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그대로 4개정도 심어져 있어요. 보기 아주 좋해요. 그 나무가 제대로 잎이 자라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철저히 보시고 공원마다 거기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이식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1쪽을 보면 미준공지역에 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미준공된 자료가 60개 있습니다. 허가 후 공사 중단된 곳이 42개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거나 허가 취소된 장소를 가보면 아주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가 공사 중단된 것은 대형 같은 경우는 2개입니다. 그건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면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된 경우는 저희가 공사 중 허가 취소된 거는 없고 대개 미착공 상태로 허가 취소된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면 미관상 상당히 흉하고 민폐를 끼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53쪽 건축과 관련해서 감사원이나 시의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의 지적사항을 볼 때 우리가 시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로 우리 구의 건축담당들은 뭘 했는가? 이걸 사전에 우리 구에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나 감사원까지 갈 정도라면 상당히 우리 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는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허가대장이나 준공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劉燦鍾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활기찬 구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河徹昇局長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종로구는 시비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시비사업 확보에 노력해주신 局長님을 위시한 課長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와 건축과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남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10~20평 정도의 소규모 주택이 많이 있는데 가끔 가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10㎡미만은 옥상에 설치된 창고형으로 해서 알루미늄샷시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10㎡미만은 3~4년 전만 해도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즘 와서 위법건물이라고 해서 부과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宣圭景 3~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속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속이 아니고 3~4년 전에 지어서 항공촬영에 안 나왔다가 2001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적발돼서 저희가 행정조치에 의한 처리, 현재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단속계획은 없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우리 玄壽漢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세평에서 두평반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샷시로 되어 있어서 김칫독도 갖다 놓고 신발장도 놓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위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4년 전에는 10㎡미만은 전부다 부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항공촬영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하면 다치는 건 서민들이에요. 2~3층 중·개축하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행정계도를 해야지 주거형도 아니고 창고형인데 창고형도 어떻게 보면 샷시로 설치해서 그런 잡다한 물건들을 쌓아놓는데 그걸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그 집은 부과하고 옆집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걸 무슨 얘기냐? 옆집에서 전화가 와서 이걸 위법이니까 철거해라. 단 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0㎡미만은 정책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건축과 민원 봅시다. 주택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을 보면 전부다 창문 부분은 위법이에요. 거기에다 샷시를 껴다 그러면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무허가건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그런 것은 통상적인 예라고 그러면서 정말 서민들 10~20평 사는 서민들이 옥상에다 2~3평 샷시한 걸 가지고 땅값에 비례해서 과태료를 60~70만원씩 물리고 그러잖아요. 개선책 좀 찾아봐요.

○住宅課長 宣圭景 10㎡미만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7월중에 이미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조례나 규정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0㎡이하에 대한 무허가행정조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건축법에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범위가 몇 %나 있습니까? 있잖아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지 부과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개선할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住宅課長 宣圭景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준공 전

의 기준치 범위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말하는 무허가건물이란 것은 준공 후에 그 건축행위와 별도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劉燦鍾委員 유능하신 우리 住宅課長님은 행정 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도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주택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세요.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득할 때에는 나대지나 전답이나, 임야를 대지로 변경시킬 때 또는 대지를 임야로 변경시킬 때 그게 형질변경 아니에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물론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이 형질변경의 원 뜻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임야나 전을 대지로 바꾸는 과정의 그 행위절차가 형질변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똑같은 대지에서 대지로 가더라도 그야말로 지형이 바뀌게 되면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cm 이상을 절토하거나 성토할 경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玄壽漢委員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경사가 있으니까 이 절 좀 깎아서 얇은 데로 메꾸고 집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형질변경을, 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와라. 그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니까 토목과 갔다 와라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다른 지목에서 다른 지목으로 바꿀 때 형질변경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상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면 그 조건을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도시계획법에 보면 50cm 이상 성토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대지라 치더라도. 이 건축법에서 50cm이하의 우리 구청장이 건축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

니다. 성토하는 범위로.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는 성토했을 때는

○玄壽漢委員 그게 몇년도에 제정된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오래 전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玄壽漢委員 잘못됐으면 고쳐야 할 거 아니냐?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라 하더라도 경사가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주택과 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허가를 받아서 인근 주변에 있는 대지나 주택, 진입로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무허가 단독주택 하나 내는데 석달씩 걸리니까 이러한 절차는 간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대지에서 또 대지가 구릉지 도로변보다 낮을 때 복토를 해야 되거든. 그것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와라 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도.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보다 낮은 지역을 복토해서 건축하는 경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의를 두다 보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복토를 함으로써 다른 집보다 월등히 높아지거나 인근 대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50cm 이상을 복토하게 되면 그건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도시계획위원회 열리는 것도 한달에 한번 하는데 왜냐하면 건축허가 내는 사람도 우리가 보름이면 건축허가 나오는 것도 가부간에

결정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게 대여섯번 더 들어오고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는냐? 그런데 그것이 '94~'95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제가 구청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게 바꿀 수가 없고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편리하게 여기 불편한 사항을 좀 교체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주택과장이나 건축과장이 계신데 아까 무허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집을 한 두평 무단증축을 했다고 하면 부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옛날 토담집들이 남아 가지고 벽돌을 반장 쌓기로 가장자리만 한바퀴 입혔거든. 그러면 그것이 20~23평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한바퀴 돌리는데 늘어난 평수가 한 서너평 늘어난다고 우리 실무자들은 보거든. 이런 경우 철거명령이 나오니까 벽을 때어낼 수도 없고 이행강제금 70~100만원씩 물린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어느 한 부분을 늘렸다면 부서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원상회복될 때까지 물리면 되는데 벽돌 한장 입혔을 때는 그럼 그것을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 와서 얘기를 하면 동장한테 얘기하고 해라.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구요.

○**建築課長 李漢求**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축을 했을 때에는 현행법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로 멸실이 됐으면 그건 종전 규모대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로 해서 무너진 거는 종전 규모로 지을 수 있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현재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축하고 똑같이 재해로 인해서 멸실돼서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짓겠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허용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건설부하고 서울시에 개정 건의를 해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점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劉燦鍾委員님! 질의해주십시오.

○**劉燦鍾委員**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건축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행정의 지금 시스템이 건축허가시 현장은 답사하지 않고 설계사에 의해서 설계를 위주로 해서 심사하고 그래서 준공까지 내주죠? 그런데 항간에는 구청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준공처리가 되는 경향이 많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설계업체한테 징계 내지는 다른 제재방법을 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다. 거기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것으로 종결지어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에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감사자료 25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시의 현장확인 대행으로 인한 장·단점, 개선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00평 이하는 건축사 조사 검사로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해준 뒤에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 준공 때 되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닌 타 건축사가 나와서 사용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위법은 없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해서 준공해주는 게 있습니다. 5층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형이기 때문에 거의가 위법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단지 준공 받고 나

서 그 다음에 거기다 건축행위를 다시 해서 위험 사항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사후관리를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허가 하면서도 안내문을 보내 드리거든요. 준공시에도 당부를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건축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60년대의 가로수로 식재를 했다면 컬러풀한 시대에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종로 대로변에 있는 나무가 뭐라고 그러죠? 버듬나무, 버듬나무를 보면 계절에 따라서 바람에 날려서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증장기 계획으로 다른 수목들로 변경계획해서 시에 올려 가지고 답변 듣는 방법이 없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지금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종로는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대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어차피 나무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심게 될 경우에 수종을 바꿉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큰 나무 수종을 옮기고 다른 수종으로 심기는 시에서도 승인을 안해주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5·6가동에 도로 복판에 있는 나무도 손도 못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지금 심는 것은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노선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블록 별로라도 다른 수종을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는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오퍼제도 실시해서 일부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버듬나무로 인해서 만에 하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 거기에서 민사가 들어온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는 버듬나무 꽃가루만 봐도 나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감기가 걸리는

데 종로 대로변에 버듬나무로 인해서 나는 재채기도 하고 감기치로도 한다. 이럴 때는 만일 민사가 들어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우리나라에는 버듬나무 갖고는 알레르기 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사시 때문에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 이러한 얘기가 종종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니다.

○劉燦鍾委員 자료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그것은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현사시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신문하고 자료는 다르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지금 현재 버듬나무 갖고 알레르기 일어난다는 것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劉燦鍾委員 저는 지나만 가도 재채기 나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알레르기 환자를 못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은.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버듬나무로 인해서 알레르기 생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劉燦鍾委員 나무를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달로 우리 종로구의 수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증장기계획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고 위치선정도 하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주십시오.

○金福同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국·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구에 지금 현재 고도제한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해제를 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

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복궁 주변에 고도제한이 12m에서 시작해서 노선별로 18m, 20m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복궁의 경관보호 차원에서 고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평창동 노선을 따라서 18m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고도제한이 되고 있고 문화재 주변은 고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각규정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높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金福同委員** 암각규정이 우리 도심 높이의 몇 m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통상적으로 암각은 문화재로부터 떨어진

○**金福同委員** 몇 도로 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 27도입니다.

○**金福同委員** 암각이 27도라면 중앙같은 곳은 50층 이상 지어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높이 제한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통에 규제를 다 받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과감하게 검토하신 후에 고도제한 높이제한을 과감하게 푸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작년에 재작년에도 울곡로 주변이나 대학로 주변을 약간 푼 곳이 있는데 아직도 더 풀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조속히 풀어줌으로써 종로구민들에게 재산상의 보호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종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한걸음 더 걷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건물의 층수는 그와 같은 사유 외에도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높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러한 것을 바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심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부 층수제한을 받습니다마는 종로 도심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건축주가 원하는 만큼 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 문화재 주변이나 일부 노선에 따라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성곽 주변에서부터 암각으로 해서 계산한다면 바닥면적에서 7.5m 올라가서 거기에서 암각을 27도를 계산한 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국장께서 아침에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의 저소득층 주민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격심사 후에 주택은행 통고에 의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일 이내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도 나간 것이 대출된 것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8억 7,000만원 정도

○**金福同委員** 금년 예산 잡힌 것은 얼마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금년에 15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지금 11월달인데 약 50% 나갔는데 현재 서민들이 집이 없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애로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동사무소로부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 구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모든 일이 아주 좋은 일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부족하면 그 일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알아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은행에서 이자가 9%, 10% 그러는데 우리가 저리로서 3%로 주는데 종로구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혜택을 줍니까? 그리고 2,000만원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능력으로 봐서 5,000만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 너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적다. 과거 IMF 때에는 2,000만원 가지고도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상향조정해달라 건의를 해서 그나마 2,4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문제점이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요즘 3,500만원짜리 집도 흔치 않거든요. 5,000만원 전세입자도 용자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을 전월세 과정을 보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매일 염려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빼주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 편익을 생각해서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낙후된 우리 충신동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약 450가구에 한해서 제가 두 세 번에 걸쳐서 설문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것이냐 해서 지난 9월달에 본 위원이 반기를 마지막으로 80%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아파트로 해달라고. 받아서 그 이후로 현재 좋다 그래서 충신동에 살고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에 4, 3명씩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서가 얼마 들어왔느냐, 어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70% 가까이 동의서가 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얼마 전에 저와 말씀한 적이 있었죠. 한양대학교와 직접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데에 한해서 관·

민과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공공계획 검토서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첨부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충신·이화지역에 대해서 공공계획 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2,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바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엇그제도 바로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내려오면 우리 한양대학교 도시과학원하고 바로 협약을 맺어서 3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되면 그 안에 이제 지구지정 요청서가 들어오면 동시에 추진을 해서 검토서가 되고 동의율이라든가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구역지정에 필요한 절차 그러니까 공방광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서울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李課長님!** 고맙습니다. 우리 종로5·6가동 충신동 일부가 현재 대지면적이 38,000㎡입니다. 현재 인구는 세대별로 800세대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를 포함한 가구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8,000㎡에 호화로운 아파트 대형아파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없고 가난하신 분들이 사는 지역인 만큼 없고 힘드신 분들이 다시금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물론 지금 제가 된다, 안 된다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 수렴해오는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관계기관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관에서 도와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진

한 것 같아서 질의가 연속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福同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무허가 철거대집행 과정에서 2000년도에는 철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건을 철거를 했는데 이것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것이 4건입니까? 철거한 것이 4건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철거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 자체 철거한 것은 자체의 인력으로 단순하게 건축 중에 철거한 것은 많습니 다라는 이거는 완성된 건물을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해서 정식으로 철거한 것만 4건입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 용역을 주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면 저희 장비하고 또는 공사현장에 있는 무허가가 있습니다. 낙산공원화 지역에 두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무허가인데 이것은 공사업체의 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러면 작년에 금년 예산에 2,700 만원을 책정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활용했습니까? 철거집행비로 금년 예산에 2,700만원을 책정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연초에 상정을 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住宅課長 宣圭景 전액 삭감됐습니다. 확실합니다.

○吳弼根委員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철거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삭감됐습니다.

○吳弼根委員 철거를 안하고 불용액이 되지 않나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 곤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정을 했다가 삭감이 됐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반영해줬

으면 좋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제가 꼭 질의를 해야 될까 문제가 됩니다마는 우리 명륜동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동별 무허가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6억 7,0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2억 7,800만원으로 40%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6억 4,100만원에 징수는 1억 2,800만원으로서 1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도 안됩니다. 이것 부과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미진합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부과건수가 512건이고 2001년도는 385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는 아직 항촉에 대한 행정조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2001은 10 월말 현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2000년에는 51%이고 2001년은 25%입니다마는

○吳弼根委員 금년예요? 징수율이 19.9%밖에 안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6억 4,100만원에 징수가 1억 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징수율이 작년도 징수율에 비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촉조사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아직 부과가 안됐습니다. 항촉부과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한 적발분, 이 적발분이라는 것이 순찰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도 많지만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항촉분에 대한 300여 건 부과가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징수율은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吳弼根委員 각 동별로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종로1~4가동은 2000년도에 150건, 2001년도에 109건 그러니까 해년마다 100건 이상씩 무

허가가 지금 종로1~4가에서는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렇게 해년마다 100건 이상, 120건 이상 늘어나면 종로1~4가는 무허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반복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과되는 게 전체적으로 신발생은 아닙니다.

○吳弼根委員 반복부과가 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吳弼根委員 우리 종로1~4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선 구 한옥들이 많고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만 늘려도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런 유혹을 건축주들이 저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吳弼根委員 종로1~4가는 무허가 천국이고 노점상 천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劉燦鍾委員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3평 미만짜리는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들이. 이런 거는 관대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또 상업지역에 3평미만이 상업하는데 불법건축물로 지금 되는 게 6건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3평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되는 게 6건 있는 것 같아요. 150평이 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순찰을 해가지고 상업용 건물이 6건이 있는 것 같아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여기 3평도 안되는 불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사하는데 완전히 허가도 안나고 그러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이미 무허가가 발생되기 전에

○吳弼根委員 아니,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한다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기존의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새로 신규허가를 못냅니다.

○吳弼根委員 3평을 저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생각 좀 해주시고. 전세보증금도 金福同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01년도에 203건 대출에 86건을 시행했는데 집행실적이거든요. 작년에는 71%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42%가 안되는데 어떻게 대출하기가 까다롭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대출심사를 작년에는 엄격하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증인 제도가 없어져서 요청이 들어오면 요건만 맞으면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요건이 안되는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저희들이 은행까지는 추천해주는데 은행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吳弼根委員 1500cc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더라도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住宅課長 宣圭景 주택과장이 대신 보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대출액도 1,000만원이 하였고 금년에 완화되면서 또 작년까지 대출한 것은 구청의 일정한 부채보증을 구청이 담보로 썼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바뀌면서 추천하는데 거기서 재산조회와 자동차 소유 여부에서 거기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는 바로 은행에 추천을 합니다. 주택은행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택은행에서 다시 우리 구청에서 추천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신용불량 여부 다음에 혹시 친인척 짜고 하는가 여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203건에 86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약 100여건 이상이 신용불량자로 돼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한 겁니다.

○吳弼根委員 이러한 모든 문제는 동사무소에 신청조건을 세밀하게 이렇게 계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金福同委員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추천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9쪽 신문로 어린이공원 보스코산업이란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건축하는 회사입니다.

○吳弼根委員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재개발하는 지역에 공원용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가 구 소유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공원을 조성해서 구에다 주는 건데 아직 재개발을 하는 중이니까 거기에다 현장사무실을 가건물로 지은 겁니다.

○吳弼根委員 불법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불법으로 지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겁니다.

○吳弼根委員 어린이공원 이런 데다가 건설회사가 불법으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고시만 났지 공원조성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거죠.

○吳弼根委員 공원용지만 났지 공원은 아니다 이거지?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재개발이 끝나면 공원을 조성해서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제외된, 떼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원이 안되어 있고 재개발을 하는 중이니까 자기들이 현장사무실 지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지은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로 2-8지구 도심재개발 현장입니다. 도심재개발을 하게되면 각 구역별로 공원이나 공공시설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몇 개 구역에서 공원용지로 부담되는 땅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땅인데 바로 재개발현장과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현장에서는 거기 말고는 현장 사무실을 지을 데가 없어요. 사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점용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사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담시

킨 겁니다.

○吳弼根委員 아무튼 2001년 11월 8일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꼭 받아내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가로수 농약 살포를 했다고 2001년도에 했다고 나왔는데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하긴 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병충해 방제는 5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해화동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 흰불나방인가 뭐 조그마한 그것이 붙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내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농약살포를 했으면 왜 이런 게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그게 실제로 육안으로는 잘 안보이고 확대경으로 봐야만 보이는데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습니다. 나무에는 있지만 사람에게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방패벌레가 주 병충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건 고독성농약을 쳐야 하는데 지금 고독성농약은 치지를 못하게 합니다.

○吳弼根委員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군데 골고루 해주세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한번 들어가는 데 거의 한달 걸립니다. 그래서 차 1대 가지고 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통인동 무궁화는 잘 심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90주 심었습니다.

○吳弼根委員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던데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2~3년 지나면 지금보다 상태가 좋을 겁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어떻게 무궁화 한주 심는데 92만 5,000원이나 듬니까? 아무리 시 돈이고 국가 돈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이 책정해서 쓴 것 같아요. 사직공원 내 나무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한 2년 동안 4억 2,760만원의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잘 조성이 됐겠네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많이 심었습니다.

○吳弼根委員 많이만 심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그리고 사직공원 너머 무악동쪽에 사직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에 공원을 하나 새로 조성한 것처럼 있어서 공원정비를 2000년도하고 금년도에 새로 했습니다.

○吳弼根委員 언제 한번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관내 밤나무 조성단지 등 여러 가지 유실수단지를 조성한 걸로 아는데 언제 한번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꾸어놓은 유실수단지나 공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자랑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일정을 정하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때쯤 좋은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劉燦鍾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李廷花 都市計劃課長님! 질문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과는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종로구의 미래를 열어 가는 곳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는 이슈가 됩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희 종로구의 도시계획이 타구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조관계도 있고 해서 업무처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도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께 원하시는 것을 못해드리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

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는 좀더 우리 구차원이나 시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서 어떤 제한이 부득이 있어야 한다면 재원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우리 종로구 관내 상세계획구역이 일부가 해제되어 있죠? 그때 당시 기안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부풀어 있었어요. 도시계획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조만간 실시되면 재산증식에도 효과가 크겠고 또 새로운 면모로 변신하겠다는 해서 상당히 부풀어 있었는데 그 후에, 해제 후에는 아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공허한 면이 있고 어떤 새로운 이슈를 쫓아만 활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향후 특히 종로구에서도 우리 교남동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 행사 때 오셔서 가지고 전반적으로 현황을 검토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劉燦鍾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최소 몇 평부터 할 수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구역의 면적이 2,000㎡가 넘어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20가구 미만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20가구가 넘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가능하면 20가구를 넘지 않으려고 합

니다.

○吳錦南委員 다가구나 다세대가 주로 20가구 미만에서 짓는 입장에선 많은 업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하에도 주택단지가 들어가고 반지하에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0세대 정도면 어린이도 많을텐데 공원도 전혀 조성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어떤 공지를 만들어서 어린이공원도 만들 수 있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게, 쉽게 말하자면 지하를 짓지 않는 방향, 지상으로만 짓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진작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건교부 법개정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특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피해를 크게 입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에는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건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가 가장 문제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부족과 주차장 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세대당 0.7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당 차가 없는 가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짓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놓고 지금 아마 입법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조성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 버린 지역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신규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된 곳 이 급근에도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데는 가능한한 확대보상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아서 거기에다 주차장시설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고.

그걸 거의다 그 옆집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주차장 확보도 해주고 4m 도로니까 좁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丁炳煥委員님 말씀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비슷한 문제입니다.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 세입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물겠습니다. 도심재개발을 시작할 적에 세입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 분들을 이주시키는지, 그리고 주택재개발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주를 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한번 말씀해주세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이나 그 모범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시조례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재개발 관련 서울시조례를 보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이 도심재개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재개발인데 어느 지역에 사는 주민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던가 아니면 주거생활비 이런 거를 보조를 받고 나가는데 도심재개발구역 내에는 사실 저희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吳錦南委員 도심재개발의 세입자는 상가의 분양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도심재개발의 세입자에게는 상가 분양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주택재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심재개발을 했다면 오히려 임대주택 재개발보다도 시가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세입자의 어떤 대책이 없고 주택재개발에만 세입자의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도 시나 아니면 건의를 해서 도시재

개발의 세입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건의를 해보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직공원이나 종묘공원에 일반 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사직공원 사실상 입구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때문에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농구장 앞의 일부는 차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거기에다 블라드를 세우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입구에는 차가 못 들어가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차가 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吳錦南委員 사직공원은 저 위에 동상이 있는데 까지 일반차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그건 막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오전에 玄壽漢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공사든지 지역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착수하는 게 많아요. 아까 쉼스 얘기도 저도 매주 일요일이면 인왕산에 올라갑니다만 쉼스를 고치는지도 모르게 뜯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뭐하려고 뜯느냐 하고 물으면 작년 연말에 청장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알았지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언제 공사가 시작한 줄 모르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으면 갑자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해주시고, 그 업자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도 순조롭게 될테구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吳弼根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추사로 무궁화 심은 거 거기 무궁화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진드기가 많이 붙었어요. 금년에도 제가 보니까 낙엽이 질 무렵에도 진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사로 무궁화는 다른 나무보다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진드기 많이 상당히 많습다.

○吳錦南委員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꼭 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가로수 보호판대 설치하는 것.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기존에 있는 건 저희가 하구요 신규로 할적에는 토목과에서 할 때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추사로에 보면 그 길이 한 21년 됐습니다. 길이 난 지가. 그때 당시는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는 나무판이 소형이었지만 지금은 나무가 한아름이나 됩니다. 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이렇게 퍼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과도형이 되어 있어요. 물론 토목과하고 상의를 드려야 하겠습니까만 이 판대도 고치고 보도도 손을 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호판 설치를 하면서 토목과에 이야기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 물론 경복궁 추사로뿐 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호판이 오래된 데는 수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기존에 있는 건 저희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나무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줄 거고 감사 때는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을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많이 받습니다. 지난 주에도 1주일 동안 받았습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서울시조례하고 서울시고시의 법적 효력 차이가 어디에 있습나

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서울시조례나 고시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炯述委員 아니 조례야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서울시고시가 상위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상위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당연히 조례가 고시보다 는 상위입니다.

○李炯述委員 서울시고시도 법적인 효력이 구조 레보다 상위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리 구조레하고 서울시 고시가 서로 상치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李炯述委員 아니 어느 게 상위에 있는지 답을 해주세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서로 상치되는 사항이 있 습니까? 구체적으로?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건 고시는 서울시 보통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조 례를 통과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 해가지고 효력이 나와야 할텐데 서울시고시란 건 고시의 효력이 어 디까지인지 난 납득이 안 가서 '91년도에 서울시 고시 181호로 해서 대한민국 중앙로변에 2m되는 개인 땅을 그대로 기증을 하도록, 2m 후퇴하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집을 지으 려면 이유없이 2m를 보상도 못 받고 후퇴를 해서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한 5분의 2가 건축을 했습니다. 근 10년 동안 주민들이 모르고 불이익 당하는 면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면 2m를 후퇴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서울시고시가 그때 행하던 '91년도 복촌 전역의 고도가 10m될 때 중앙로변 만 3m 높여서 13m로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인 센티브를 준 게 그 3m거든. '92년도에 복촌 전체 가 10m로 풀려졌습니다. 고도가. 그러면 13m의 그 3m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주민들에게 해당 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고시가 효 령을 발휘하고 있거든. 이 점은 진즉 종로구청에 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재산상에 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고 현재 10m인데 13m란 얘기는 전혀 주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m될 때 13m 높이로 지을 수 있도 록 했는데 지금 전역이 16m거든.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서울시나 종로 구청은 주민들을 기만해 가지고 재산을 착취했다 고 하는데 局長님! 대안이 있으시면 답을 주시지 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91년도에는 고도가 10m 였는데 3m 인센티브를 주면서 2m를 후퇴하게 했 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 후로 고도가 16m로 변경이 됐는데도 고시가 그대 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 고시는 불합리한 고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炯述委員 그거 잘못됐죠? 그리고 두번째, 지금 서울 고건시장이 복촌 전 주민에게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겠다 해가지고 25억 예산을 아주 세목별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가가 호호 주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우송을 해줬는데 서울시 얘기는 이게 도로가 10m로 확정이 됐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긋 는 건 종로구청에서 해줘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거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한 게? 지금 그 도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25억을 확정지 어놨는데 이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면 종로구청에 서 이 도로선을 확정해줘야만 돈을 쓸 수가 있는 데 종로구청에서 확정을 안 지어줘서 할 수 없애 는 이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을 주 시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10m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절차는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10m를 확장할 의사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겠다 하는 얘기는 조금 다 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동길은 서울시 에서 복촌 환경정비용역을 하면서 용역변경 내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동길 부분에 25억이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 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판단을 이 길은 넓히는 것보다 현재대로 놓고 정비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 局長님! 지금 그 도로는 본 위원이 수없이 구정질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중앙고등학교에서는 계동 사거리까지가 약 1,350m, 폭 6m도로 양쪽에 지금 차를 대놓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놔 가지고 일방통로로 해가지고 대형차는 전혀 빠져나가지지를 못합니다. 또 점포에 물건을 내놔 가지고 더 힘들고. 거기 중앙고등학교 학생 4,000여명, 대동정보학생들 한 2,000여명, 출퇴근 주민들하고 차량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복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 저래 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 문턱에 들어오면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행복이 샘솟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는 돈도 안 쓰겠다고 그러고 길이 요철이 돼 가지고 들고나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어디 있냐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종로구청 집행부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건 구호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또 두번째, 그 도로가 거기에 인접해있는 주민들 2,000여 명이 전부 길을 안내면 안되겠다. 아름다운 종로가 안되겠다. 여섯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구청에 와 가지고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그 사람 얘기 듣고 서울시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간 것입니다. 지금 전체 주민들이 저래 가지고 길을 내야 되는데 애초에 주민들 반대로 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 2,000명에 불과 한 10여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물론 소수 주민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도로는 들고 날고 요철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고 도시 가꾸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지 내일 했다가 바꾸고 모래 했다가 바꾸고 지난달에 하우디에서 와 가지고 시정개발원에서 구청장님 모시고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길은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 반대한 숫자가 전체 주민의 0.2~0.3%도 안되는 주민이 주민의 96~97%가 찬성하면 거기도 신경을 쓰고 주

민들한테 가서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이 길을 두는 게 옳은지 가회동길 20m를 넓혀 놔두고 웬 양반이 왜 거기 주차장 했느냐 하고 난리가 나니까 좁혀 가지고 양쪽에 차 대는 아주 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 내놓은 도로를 제대로 쓸 생각을 안하고 거기다 울퉁불퉁 주차 대는 이러한 발상을 하면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잘 한 것인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데 국장님! 계동길 가보셨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5분의 2가 지금 집을 지어놨죠. 도로 2m 내놓고 집은 지은 사람 또 하지 않은 사람 중의 70%가 길을 뚫어달라는 애깁니다. 정말 10년, 100년 후에 아름다운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집행부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주요업무계획에도 15페이지 하단에 복촌마을 가꾸기에 대해 가지고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에 들어가 있는데 시에만 맡기고 시정개발원 하우디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돈 지금 현재 1,000억이라는 돈이 배정되어 왔으면 종로 자산입니다. 하단에 보면 7동을 샀다고 했는데 7동 샀다는 것은 시장님 약속한 작년 11월 이전 애깁니다. 188동을 사겠다고 했는데 금년 중에 140억원인가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돈 10원 하나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로구 집행부에서 서울시가 따라오도록 연구도 하고 이 부분에 전문직원을 아침에 오전에 잠깐 내보냈다가 이 업무를 보도록 담당국장님이 정말 서울시에 종로에 거대한 큰 작품을 만들려고 그럴 것 같으면 지원금 더 내려오도록 고건 시장님은 1,000억 이외에 2,000~3,000억을 더 넣어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종로 자산이고 종로가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호기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가장 유능한 직원 하나 좀 물색을 해서 뽑아 가지고 파견을, 상주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작품이 이루어지지 적은 인원 복촌 파견되어 갔다가 오후에 어떻게 일이 양쪽에 됩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일은 잘 가꾸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 곧 닥쳐옵니다. 닥쳐오면 가장 들보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곳도 종로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좀 연구하셔서 종로가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피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135쪽을 봐주세요.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미이행자 처리내역을 보면 어떤 동네는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 들고 어떤 동네는 또 늘고 그랬는데 특혜의혹이 보이네요.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쁜 양반들 사는 곳은 많이 봐준 게 느껴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2평, 3평짜리 압류하고 하는 행위가 우리 구청에서 세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태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류를 하기 이전에 대화로써 풀어서 할 수도 있는 길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압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압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사전에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해서 대화나 설득으로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압류하면 다음에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압류를 풀어야 사니까 그때 가서는 자동으로 받게 됩니까? 부과금울.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압류를 그대로 안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金福同委員** 내용별로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맞춰보십시오.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는 건수가 30건인데 17건이고 부과금액도 2,409만 1,000원인데 1,815만 4,000원이 되네요. 이것은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건수도 없어지고 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계셔서 줄었는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5·6가동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것은 확률을 보면 상당히 차이나요. 청운동 같은 데는 무허가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적어도 저희에게 적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항공촬영도 안되고 그래서

○**金福同委員** 여기에 적출된 것은 항공촬영만 된 것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항공촬영 이행강제금 현재 부과된 것은 금년도의 항공촬영분은 부과 안됐고

○**金福同委員** 오전에도 언급한 애깁니다마는 이 속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평미만 불법건축물 찍힌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 가압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 완전히 위법한 얘기가 되죠. 3평미만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남의 재산에 압류해놓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각 동네마다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은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4평미만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해제해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주민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무허가를 단속하는 법을 만든 취지도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는 행정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남의 재산에 부동산 압류를 해놓

고 있지만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고 찾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보면 안타깝고 딱해요. 저도 찾아가서 사정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검토해본 결과 4평도 안됩니다. 날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3평미만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다 했는데 그 이후로 압류해 가지고 압류장을 가져왔을 때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다시금 확인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애정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증개축 보수현황 및 사후관리는 상당히 철저히 한 걸로 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선정이나 적정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 관내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부암동사무소 뒷편의 12만㎡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 마쳐서 12월쯤에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吳錦南委員 방송에 나오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감사자료 261쪽에 보십시오. 261쪽에서부터 265쪽까지 녹지관리시설 및 사업집행내역 관계입니다. 200년도 1월 10일까지 잔액이 8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의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쓰고 남은 잔액은.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것을 시로 넘겼습니까? 구로 이입을 시켰습니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시비는 집행잔액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시비는 시로 다시 올라가고 구비는 구에서 금년에 이월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2001년도를 보십시오. 지금 32건에 3억 9,300만원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구비, 시비를 합쳐서요. 그렇다면 29억 정도에서 집행이 25억 정도니까 4억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을 쥐도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편성해도 적절하게 좀 써야 할 데를 못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마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예가의 87% 정도 87.5%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3% 내지 14% 정도는 당연히 낙찰차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1억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8,500만원만 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15% 깎여 가지고 6,000만원 정도 공사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예정가에 시키더라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幹事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종로관내에는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혜화동에도 옛날부터 부자동네라 100평 내지 300평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을 헐고 지금 다세대, 다가구, 원룸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러한 원룸이

나 이러한 다가구를 많이 지음으로 해서 동네가 슬럼화가 되고 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를 대책없이 저기 하지 않고 집을 짓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서는 이렇게 신청만 하면 건축을 지을 수 있게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건축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앞으로의 건축정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吳弼根幹事님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청의 집행공무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구청에서 특별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건교부에서 제정한 건축법에 따라서 사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건축행정입니다. 특히 건축법 관련 인허가 민원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규제를 다 철폐를 해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법에 맞으면 하여간 의무적으로 그것도 나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라도 우선 조금 규정들을 강화해야 되겠다.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죠.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하죠. 여러 세대가 작은 곳에 밀집되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다세대하고 다가구에 대해서 규제를 엄격히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해가지고 제1종, 2종, 3종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혜화동 같은 데는 1종이 됩니까? 2종이 됩니까? 3종이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吳弼根委員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용역결과가 나와야
○吳弼根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맨처음에 이렇게 의회에 왔을 때 경복궁이나 동대문지구 이러한 상세지역이 있었습니다. 상세지역 용역에 지급된 돈이 제가 알기로는 5억 7,0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2, 3년도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서 앞으로 우리 종로를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취지로 해서 용역비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시 돈이지만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계획도 예산만 낭비되는 그러한 졸속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불식되도록 용역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돈화문 있죠? 밑에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 李廷花課長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잘 만들어놓은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혜화동도 역사탐방로 거리를 만들었지만 훨씬 더 거기가 설계가 잘돼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거기까지는 공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권농동 100번지 쌈지공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혜화동에서 구청으로 오면서 부끄럽게 느낀 것이 정말 아름다운 종로, 정말 문화유산이 산재해있는 공원 옆에 무허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 지금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거리를 쳐다보지 않고 옵니다. 다른 외국인이 그러한 좋은 거리를 만들어놓고 돈화문 앞에서는 됩니까? 왕궁 교대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행사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그쪽을 쳐다봤을 때 그 분들의 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작년

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에게나 부시장에게 부탁을 해서 꼭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明年에 6월달에 월드컵이 바짝 다가왔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약속이 유효한니까? 물 건너 간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10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그 지역 일대 중에서 면적으로 볼 때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쌈지공원으로 우선이나마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60억이라는 거금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더니 우선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60억을 다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10억을 지원하고 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서울시장님께서 저희 해화동에 사십니다. 우리 해화동 걷고싶은 성대간 걷고 싶은 거리 공사를 하면서 정말 토목과 직원들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보고 지적만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징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만한 자리가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의지만 있다면 시장님이 옆에 사시니까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저라도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을 모셔 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데가 이렇게 있는데 좀 해결해주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그 지역이 일목요연하게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말씀드리기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보고를 드리

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을 하면 세대당 2,000만원이 용자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이 계속 된다면. 그리고 경복궁 내자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시는 바대로 방금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주민발의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이미 관련과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아마 다음 12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에서 일차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면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요구가 있을 겁니다.

○**吳錦南委員**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간에 윤곽은 나오겠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소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되면 가부간에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吳錦南委員**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지요. 그리고 사직 1지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2지구 주민들도 1지구와 같이 도심재개발을 하고 싶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갑니다. 저한테도 물론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랄까 상황이랄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직2구역은 상당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사직2구역도 사직1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심재개발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이 풍치지구선이 지나가고 있고 터널 주변이면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경관도 1지구에 비해서는 훨씬 나쁜 편이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재개발은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나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져서 가능하면 꼭 필요하다면 주거환경을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시에서도 설득이 된 적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주민들 의견을 보니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재개발에 미련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어떤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든 재개발이든 재개발쪽에서는 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다 보니까 재개발 추진을 하던 분들은 잠잠해있고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던 분들의 문의가 몇번 왔었습니다마는 뚜렷한 구심점은 없기 때문에 작년 이후로 소강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시 재개발을 위원장이 바뀌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재개발이 갈수록 어려워 집니다. 사직1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법령도 기존의 법령의 흐름에 있었고 또 가능하면 재개발을 조금 이렇게 장려하는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턴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자체가 가능한 재개발을 억제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같으면 서울시의 정책방향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방향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吳錦南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福同委員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 있잖아요? 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방제라고 합니까? 금년에 보면 너무 늦게 시작해서 작년같은 때는 흰나방이 와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방이 금년에는 조금 덜했어요. 덜했는데 대충 살포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주로 흰불나방인데 최성기는 6월하순입니다. 6월 20일부터 30일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오고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파리 번질 때부터 조기에 몇번 실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나오기 전부터 방역실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흰불나방은 사진에 살포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금년 가을같은 때를 보면 나뭇잎에 켜득켄득한 게 붙어 가지고 나무에 엄청나게 해충이 많더라고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가오는 2002년부터 약을 뿌리는 것을 조기에 한 10일만 앞당겨서 뿌리면 상당히 벌레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약값을 더 추가해서 局長님께 올리세요. 열번 할 거 열다섯번 하는 것에 금액이 차이가 나면 빨리 올려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이상입니다.

(安載弘委員長, 吳弼根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委員長께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幹事が 퇴사진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長!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추호도 저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간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보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2년 월드컵이 5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녹지과에서는 월드컵하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그것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월드컵과 대비해서 별도로 세운 건 없고 저희는 전반적인 게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은 일단 화장실을 개량해야겠다 해서 지금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로니에공원은 야외무대를 하면서 올해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부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제 날짜로 해서 시에다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라고 해서요. 내년 봄에 예산이 되면 마로니에공원도 내부수리만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꽃이 가로환경정비인데 가로는 시에서도 상암경기장에서 사직로가 주대상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금년엔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현물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승인동에 가면 동묘라고 있죠? 동묘는 어떤 공원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사적지이면서도 근린공원입니다.

○安載弘委員 그게 동묘란 게 관운장을 모신 보물 142호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네.

○安載弘委員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업무자료에도 특별한 보고내용이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해서 여쭙보는데 오늘 아침과 어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올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로서는 이 동묘공원을 이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중국인들이 종로 또는 서울을 방문했을 때 정말 방문할만한 사적지가 있더라 하는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물 142호가 거기 건조물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운장을 포함한 네 분의 목각을 보물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느 게 보물입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동묘공원에서는 사실상 그 집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곳은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저기 가니까 공원녹지과 직원이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라는 게 두가지의 의미로 본다구요. 큰 쪽으로 본다면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는 것과 그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다 관리하는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동묘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늦은 것은 아니니까 이 동묘공원을 활성화 즉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동묘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원녹지과나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중국의 경기가 세 가지나 한국에서 치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압니다. 동묘가 특히 중국인들이 숭상하는 관운장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마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화장실을 개축을 했습니다. 한옥건물로 개축을 했고 금년에도 일부 내부를 정비했습니다. 시설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 문제는 문화진흥과와 연계해서 문화진흥과에서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묘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문화진흥과와 아울러서 교통지도 과인가요?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 거길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저는 동묘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화재라고 생각이 돼서 가봤는데 과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은 완전히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공영주차장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어떤 환경이 정말 문화재를 유지관리 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종로구 입장이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종묘 인근에도 쓰레기장이 있는 현실이니까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곳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서 가지고 좋은 이미지, 좋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과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6조, 49조에는 개발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대지라 하더라도 경사면이나 임목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건 이중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 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또 다른 제한은 주민들이 어떤 허가를 요구할 때 즉,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굉장한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이런 경우입니다. 도시계획법 49조에는 소위 건축물에 건축을 하던가 또는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기타 형질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규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지금 이중규제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경사도나 임목변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실 현황상 대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무론 건축이 가능하거나 이렇다면 별도로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지라든가 이런 게 수반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민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형질변경 허가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절차, 기간 소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토지의 형상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뜻입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법 자체를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중적인 규제가 아니냐? 법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법 자체를 좀더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여쭙볼게요. 종전에는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경사도나 임목변수가 일정 %일 때에는 소위 허가규제를 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종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요?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 2000년도 7월 12일에 526-1호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민경식이란 사람이 7월 12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허가조건이 사유지 128-1을 통과하니까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을 얻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나 택지에 있어서 하수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공공하수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2000년 7월 이전에 523-9의 4필지에 대해서도 하수구가 이 128-1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523-9호의 그 필지와 526-1호의 필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즉 하수계획의 소유주인 평창동 128-1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523-9호 등 4필지는 128-1호로 하수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하수구이고 523-9호는 상단부의 토지고 지금 얘기한 526-1호 토지는 하단부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523-9 외 4필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8-1호의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128-1에 대해서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가지고 왔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한 것도 공공하수구는 관리청이 종로구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종로구청에서는 왜 이 공공하수구가 물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왜 소유주를 통해서 설치를 해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희도 이 526-1 토지소유자가 두어달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 128-1 여기로 공공하수관이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 현황을 저희가 보건대 128-1을 제외한 윗부분 전체는 '70년대에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128-1은 경계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현황을 볼 때 기존의 128-1을 통과하고 있는 관은 과거에 주택이 조성되기 전에 일종의 계곡물 정도만 받는 이런 관이 집 내에 묻혀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23-100 외 4필지 여기 위애가 죽 개발이 되고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관을 이쪽에 연결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여기를 나가봤을 때 이 관들이 128-1을 통과하고 있지 않았습다. 기존의 위에 있는 토지들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빼지를 못 해서. 그런데 523-1호 외 4필

지 이 토지소유자가 이걸 형질변경을 받을 때도 128-1의 사용승낙을 받아 오라고 조건이 부여돼서 45일간에 걸쳐가지고 어렵게 겨우 받아와서 공사를 하면서 이 주변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8-1의 소유자는 여진희

○安載弘委員 잠깐만요. 그런데 그걸 정비할 때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서 李廷花課長이 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 523-100 외 4필지 이거 하는 분이 주변도로하고 전부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자면 지금 李廷花課長이 보고하는 내용도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은 거꾸로 역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고하신 대로 그 공공하수구가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다고 인식을 했다면 토목과의 협조를 받아서 적절한 예산을 갖춰 가지고 그 관리가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어지럽게 흩어져있는 것을 제대로 잡아서 공공용지를 하던지 또는 공공용지를 이용하던지 제대로 판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과거 523-100 이 곳에 허가가 나갈 때 '90년 초였습다. 과거에 나갈 때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토목과에서 조건부여가 됐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금 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정비를 할 때까지 이 분들이 기다려서 허가를 받던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분들이 먼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한테 그걸 정비해달라고 안 했고 또 구에서도 그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관이 모를 때 즉,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李廷花課長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민간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겠고 지금도 토지형질변경의 행·허가와 관련지어서 하수관로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부담을 시켜서

그 공사를 하계끔 조건부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李廷花課長이 됐든 전임 과장이 됐든 누가 됐든 적어도 하수도를 관리하는 게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128-1을 통과하는 하수구가 523-9호 등 4필지 소유자가 하수구를 만들어서 신설해줬다면 새로 그러한 관례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민간부담도 시키고 구의 예산도 투입을 시켜서 제대로 된 공공하수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따진다고 보다는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523-9호가 128-1로 나가서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4년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건부로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2000년 7월 19일에 민경숙이란 사람한테 똑같이 128-1을 통과하도록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 7월 이전에 허가한 523-9호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4년 동안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 딜레이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4년 걸린 사람이 민경숙이란 사람은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건을 그렇게 걸었어요. 128-1을 통과하니 사용승낙을 받아라. 그럼 행정청에서 행정을 할 때 이거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니까 적어도 李廷花課長이 됐든 전임과장이 됐든 누가됐든 동일한 조건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민경숙씨의 허가를 취소해요. 왜 취소하느냐? 8월 30일까지 사용승낙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못 얻었어요. 그런데 8월 31일 날 공문을 보내요. 9월 8일까지 제출해라. 그런 일이 있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安載弘委員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9월 8일 보완사항이 미제출되어 반려 처리한다. 한마디로 이걸 행정청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민원인을 위하고,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할말

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또 특히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과장 보고대로 4년이 걸려서 사용승낙 받은 걸 똑같은 토지의 하수구를 정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523-9호는 상단부부터 내려가고 526-1호는 중간에서 인서트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8-1호에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리한 행정 아니냐 이거죠. 특히 도시계획과는, 여러분들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지어서 규제 위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니 규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인근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줄 때에는 조건부로 언제든지 하수구가 없으면 하수구시설을 하라든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러한 부담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李廷花課長이나 토목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하수구를 설치해야 하는 그 의무는 자치단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조건부를 걸어서 그 하수도를 어느 지점까지 끌라고 하든지 그 인근토지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결하게끔 해요. 그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30~40m의 공공하수구를 민간인으로 하여금 만들게 한다구요.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행정인가 묻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523-9호 이 토지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정리가 다 안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정비가 되기를 기다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분이 '99년인가 이 땅을 전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정비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조건을 부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것만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했고 그거를 하면서 집을 팔 짓고 그래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계단도 놓고 도로도 놓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8-1호를 어떻게 사용승낙을 해줬나 하면 우수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오수는 절대로 내 집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해서 오수관을 별도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만 흐르는데 그런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데 526-1은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만약 세월이 흘러서 이 공공하수관이 묻혔다고 하면 모르고 할 수는 있었는데 이걸 전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다 128-1이 관이 원래 협소한 관인데 지금 연결만 해냈거든요. 위에서, 그런데 기존에 옆에 허가 나갈 게 많은데 계속 연결만 할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관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8-1 토지소유자가 합의를 하건 아니면 그 부분의 점용료를 저희 관에서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安載弘委員** 아니 그리고 '98년도에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수해가 나 가지고 월탄 박종화 선생네 하수를 고친 사실이 있어요. '98년도에 폭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만 시켰지 공공하수구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동일해요. 우수나 중수정도는 하수로 뚫다 하더라도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위로 펌핑을 한다고 그랬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네.

○**安載弘委員**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예요. 526-1호도 128-1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수나 중수를 빼게 하고 하수에 대해서는 펌핑을 해서 상단으로 뿜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승낙서는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에서 정비를 해서 128-1의 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비를 한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좀더 크게 본다면 저희가 정비를 한 다음에는 연결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문제는 뭐냐하면 이 526-1호가 2000년 7월 19일날 그렇게 돼서 9월 8일날 소위 반려 처분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물을게요.

관련 규정을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서 봤는데 관련된 조항을 내가 모르겠거든요. 9월 8일자 5,076호 도시계획과 문서에 의하면 3년을 보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1차, 2차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2000년 9월 8일까지 보완사항이 미제출 되어 반려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취소된 거 아니에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던 게 아니고 이 조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조건을 붙였고 이 조건을 이행할 하면 허가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서류가 반려된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이 뭐가 있습니까? 즉 조건부허가나, 이게 뭐야? 최초의 하수계획이 조건부 가결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즉 이렇기 때문에 허가가 반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도시계획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도시계획조례 어디에 있나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 겁니다. 여러분들은 128-1의 하수구 사용승낙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경숙이란 사람한테 그 조건을 부여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어렵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安載弘委員**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까 답변했잖아요. 4년 걸렸다고. 4년 걸린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128-1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한다고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주택지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규제도 해서는 안돼요. 도시계획법 46조의 단서규정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지 아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규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자체에서도 그 허가권을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구요. 구청에서 말이죠. 전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할 때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따라야겠지만, 당연히 따라야죠. 도시계획조례가 종전의 형질변경조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통합되면서 46조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여러분들은 128-1의 토지사용자가 사용승낙을 받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그랬다구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공공하수구가 들어가야만 그쪽이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98년에 하천이 범람해서 그쪽 담장이 붕괴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었고 2000년 초 523-6호에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일을 하지 않고 2000년 7월에 와서는 또다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다구요. 도시계획과에서, 몇 조예요? 몇 조인가요? 그래서 河局長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河局長님도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46조가 됐든 49조가 됐든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 자체가 관이라는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이제 관이 아니에요. 벼슬판자 官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관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나 이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은 그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소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조금 이따 찾아보시고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택과하고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파란 것 무허가건물 관리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99년 8월 서울특별시 주택국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실무지침이라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한테 빌려왔는데 이것이 최신판인가요? '99년 7월, 최신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물어봤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의는 3개로 나눠지잖아요. '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에 있는 것은 우선 무허가건물이고 두번째로 '81년 제2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것도 무허가건물이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의 기존 무허가건물을 B라는 사람이 샀어요. 그랬을 때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81년 12월 30일 현재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건물이죠?

○住宅課長 宣圭景 그렇죠.

○安載弘委員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기동 226-28, 29, 30에 구 엠마누엘 기도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광교회에서 샀어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명의변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安載弘委員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말고 내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무허가건축물단속및관리실 무책자에 의해서 소유자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되느냐 하면 '79년 전수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관련된 자료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뭐라고 보내줬느냐 하면 제가 아까 구기동 226-28, 29, 30 무허가건물을 달라고 했더니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 그랬습니다.

○住宅課長 宣圭景 확인원을 발급할 수 없다는 거죠.

○安載弘委員 그렇죠. 확인원을 발급할 수 없는 이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발급할 수가 있잖아요?

○住宅課長 宣圭景 그렇죠.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구 임마누엘 기도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규정상 명의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그 건물에 대한 명의를 우리 구청 대장상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의변경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安載弘委員 그 애깁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처리라는 제도가 있죠?

○住宅課長 宣圭景 지침입니다.

○安載弘委員 지침이죠? 지침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의 하나는 무허가건축물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住宅課長 宣圭景 예.

○安載弘委員 즉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의 범위가 있고 미신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도 조건이 있어요. 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해당조건이 있는 건물은 어느 건물입니까? 어떤 경우에 무허가건물의 행위완화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즉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신고해서 외벽을 치장하거나 벽 사이를 수리하거나 1m미만의 차양을 설치하거나 담장이나 옹벽을 축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어느 건물에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住宅課長 宣圭景 기존 무허가건물의

○安載弘委員 기존 무허가건물이죠.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게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등재된 건축물은 당연히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81년 12월 30일 이전에 항공촬영에 이미 항공촬영 당시에 이미 건립된 건축

물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安載弘委員 그것은 선과장 생각이죠?

○住宅課長 宣圭景 아니죠.

○安載弘委員 업무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住宅課長 宣圭景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의

○安載弘委員 기존 무허가건물의 정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법령과 조례와 규칙과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용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등재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왜냐하면 '81년 제2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住宅課長 宣圭景 맞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개보수하거나 대수선을 하거나 기둥을 바꾸거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81년 이후에 제2차 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즉 다른 별도의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니고 '81년 12월 31일 이전 무허가건물에 등재된 주택과가 보유하고 있는 대장상의 건축이라야만 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住宅課長 宣圭景 주택과장이 생각하기에는

○安載弘委員 주택과장 생각이 아니라

○住宅課長 宣圭景 지침상의 물론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는 신고처리 완화지침에 지금 첫째로 말하는 그 기초건축물 무허가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대장상에 없다 하더라도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로 본다는 게 지금까지의 해석입니다.

○安載弘委員 알아요.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을 꼭 드린 기본적인 이유가 선과장이 생각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

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가 선과장한테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도시계획이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는 아까 하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재량권의 범위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인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택과는 관리실무 외에도 여러분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住宅課長 宣圭景 그렇지는 않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선과장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구기동 226-28, 29, 30에 대한 무허가건물 행위완화의 신고처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책자 25페이지에 적용대상 건축물이 나옵니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니면 행위완화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기동 226-28번지 외 226-32 정선양 씨가 개인적으로 잘못했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해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 개보수대상 건물이 아닌 이것은 개보수 대상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어요. 신고처리 일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과장! 답변해보세요. 하국장이 답변해서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관련된 실무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구.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왜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재량이지. 그 답변만 하세요. 적어도 본 위원이 질의한 226-2, 29, 30에 대한 소유자 영광교회에 대한 건축 행위완화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신고를 받아주면 안되는데 신고를 받아줬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구기동 그 지역에 사는 일단의 주민들과 새로 이사온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나, 나는 너희들

하고 같이 못살겠다. 서로서로 고발하고 증오하고 그 불씨를 누가 제공해? 주택과에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처리 규정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신고처리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 그 교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상 알맞는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행정청의 잘못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동안 그 주민들이 느껴온 갈등과 행정청에 대한 불신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행정행위는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모래에다 물을 쏟아부으면 답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나요. 정선양 씨는 정선양 씨대로 영광교회를 미워하고 영광교회는 영광교회대로 고발하고 주민들은 또 행정청이 잘못했으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보시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도시계획조례 21조에 보면 개발행위의 절차 등 해서 1항 밑에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두번째 이해관계인의 보호여부 여기에 저희는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에서 정비를 안한 거 잘못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 일단 밑에 128-1 월탄 박종하 선생의 집 밑에 내려가는 관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 본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해줄 수는 없고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安載弘委員 잠깐만요, 21조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21조.

○安載弘委員 말씀해보세요.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1항2호 이해관계인의 보호여부는 그 항목에 저희는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安載弘委員 21조 1항2호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여부? 그래 가지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주변의 하수도관망을 전부 정비하는 것은 나중에 겁

토하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월탄 박종하 선생 집 화단에 지나가고 있는 관로를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은 이해관계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安載弘委員** 조례와 관련된 규정이나 李廷花課長이 답변을 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과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는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너무 많이 규제하고 있어요. 특히 행정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도시계획법 21조 관련된 조항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李廷花課長! 잘 한겁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충분히 대화를

○**安載弘委員**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불과 7월 19일 조건부허가를 해주고 9월 8일 즉 한 달, 두 달이 채 안돼서 여러분들은 허가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00년 7월 15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가진 조건의 토지는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는 되지도 않는 하수구를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날짜가 두 달도 안되어 가지고 허가취소하고 중요한 것은 李廷花課長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21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의 취소라는 조건이 있네요. 좋은 걸 알으켜드립니다. 23조3호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예.

○**安載弘委員**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이 건은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전에 조건을 이행을 해야

허가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조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安載弘委員**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렇겠죠. 李廷花課長도 도시계획과장으로 종로구에 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점을 범みに 얽매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자구요. 그것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이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이 사람은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영원히 적어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집을 못 지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128-1 사용승낙을 또 받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행정은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다. 나는, 주택과장님! 답변해보세요. 답변하기 전에 도시계획과 얘기 좀 할게요. 도시계획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많이 붙여요. 이래서 조건 붙이고 저래서 붙이고 저래서 또 붙이고 준공검사할 때 또 붙이고 준공검사도 사실은 건축을 위한 준공인데 거기가 또 미흡하면 또 다시 해오라고 그러고 소위 레드테이프가 쓸데없는 서류를 많이 요구해요. 과감히 개선을 하자구요. 적어도 그러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그런 것은 집주인이 적어도 건축주가 되는 사람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이 적어도 크게 범みに 어긋나지 않고 그 행위가 건축행위에 이어진다고 하면 과감하게 규제를 푸세요. 李廷花課長!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저는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말씀해 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수고했어요.

○**住宅課長 宣圭景**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의 정의상에 있는 건물과 무허가건물행위완화선고처리지침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동일시 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에 지침상의 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국한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각종 해석이라든가 또 지침 해석 등을 다시 찾아보라고

○**安載弘委員** 이게 없으면 내가 몰라요. 내가 주택과 업무를 어떻게 압니까? 무허가건물행위 완화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신판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없다고 하였고. 어차피 저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좀 목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했는데 이해해주십시오. 제 성격이 원래 그렇고 또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과장이 시인한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弼根** 安載弘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吳弼根委員長代理, 安載弘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宣圭景 住宅課長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관리국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11월 30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15時5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住宅課長 宣圭景
都市計劃課長 李廷花
建築課長 李漢九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